

제3181호
2025. 4. 8.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25-372호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 제2025-373호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 제2025-37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7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72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도로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 ①항의 소액부징수 상한액 기준 변경
 - 중구 도로점용허가 조례 제9조 ①항의 소액부징수 상한액 기준을 도로법시행령에 맞춰 “기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
- 나.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의2 기재사항 정정
 - 전단의, 제2호 “가목”을 “나목”으로 기재사항 정정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7층 건설관리과, 전화 : 02-3396-6007, 팩스 : 02-3396-8828, 이메일 : hyun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이 규정의 개정안은 중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5,000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 2 전단 중 “가목”을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③ (생략)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 1만원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 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의 2(과태료 부과·징수) ----- --- 나목 ----- -- .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73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도로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도로법 시행령과(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우리구 조례(중구 도로점용허가 조례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어, 별도로 중구 도로점용허가 시행규칙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불필요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7층 건설관리과, 전화 : 02-3396-6007, 팩스 : 02-3396-8828, 이메일 : hyun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이 규정의 개정안은 중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7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 교육·문화·예술·체육·보건소, 도서관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방법, 운행대상, 운행범위, 운행시간 등 (안 제3조~제7조)
- 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수당 등 (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 02-3396-6206, 팩스 : 02-3396-8860, e-mail : pkparkk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분야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